‘20. 6. 24.(수) 11:00
운 영 위 회 의 실

-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-

검 토 보 고 서

의회운영위원회
전 문 위 원

-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-

검 토 보 고 서

1. 개 요

○ 제 출 자 : 육미선 의원 등 10인

○ 제출일자 : 2020년 6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6월 24일

2. 제안이유

○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·정리하고 운영 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일부 원칙· 기준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함

3. 주요내용

○ 의사일정 작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- 회기 전체의사일정과 당일의사일정 작성
- 전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

○ 의사일정 변경에 의사일정 삭제 신설(안 제9조)

○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는 의안 추가(안 제12조)

- 회기 변경의 건
- 휴회 또는 폐회에 관한 건

○ 투표에 있어 투표 인원수 명확화(안 제47조)

○ 위원 아닌 의원의 출석 허가 및 발언 범위(안 제53조)

-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만 할 수 있음

○ 의원 자격심사 관련 자구 수정(안 제70조 ~ 제72조)

- 의원자격심사 청구의원 → 청구의원
- 의원자격심사청구서 → 청구서
- 의원자격심사 보고서 → 심사보고서
- 피청구 의원 → 피심의원

○ 방청석의 장애인석 지정(안 제73조)

4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·정리하고 회의 운영 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일부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

○ 기존 규칙은 9장 94조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제2장 의장과 부의장, 제6장 도지사·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, 제7장의

의원의 사직에 관한 조항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여 7장 84조로 구성되었음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충청북도의회 회의 총칙 규정
- 안 제3조에서 제46조까지는 회의에 관한 사항
- 안 제47조에서 제62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
- 안 제63조에서 제69조까지는 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
- 안 제70조에서 제72조까지는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
- 안 제73조에서 제78조까지는 방청에 관한 사항
- 안 제79조에서 제84조까지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○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제정과 더불어 시행규칙인「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」이 전부개정되면 하반기 의회 운영에 있어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. 끝.